

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

제정	2011.	9.	19	규칙 제 645호
일부개정	2013.	5.	24	규칙 제 707호
일부개정	2013.	12.	2	규칙 제 717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)
일부개정	2014.	3.	31	규칙 제 730호
일부개정	2014.	10.	8	규칙 제 765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)
일부개정	2015.	6.	8	규칙 제 788호
일부개정	2016.	3.	11	규칙 제 833호
일부개정	2018.	8.	9	규칙 제 925호
일부개정	2018.	10.	16	규칙 제 935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)
일부개정	2022.	5.	17	규칙 제1073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운영계획) ①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6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필요한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8. 9>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간운영계획을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3조(위원 추천 등) ① 조례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시민·사회·직능단체, 기관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 <개정 2015. 6. 8>

1. 용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 100명 이상의 시민·사회·직능단체
2. 시에 사업장을 둔 종사자 300명 이상의 기업체 및 노동조합
3. 장애인, 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
4. 그 밖에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시민·사회·직능단체

② 제1항의 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단체별 1명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6. 8>

제4조(선정기준 및 결격사유) ① 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(이하 “지

역회의”라 한다)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5. 6. 8>

1. 재정·예산 등 관련분야의 경력과 전문성 구비 여부
2. 지방세 성실납부 여부
3. 주민참여 예산학교 수료가능 여부 등

② 삭제 <2018. 8. 9>

[제목개정 2014. 3. 31]

제5조(신청 및 추천) ① 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·추천하여야 하며, 지역회의 위원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 위원의 모집절차 및 모집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5. 6. 8>

제6조(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, 분과위원회별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3. 5. 24, 2013. 12. 2, 2014. 10. 8, 2016. 3. 11, 2018. 8. 9, 2018. 10. 16, 2022. 5. 17>

1. 자치행정분과위원회 : 시민소통관, 감사관, 공보관, 정책기획관, 법무담당관, 청년담당관, 자치행정실, 재정국 소관 사항
2. 문화복지분과위원회 : 교육문화국, 복지여성국, 보건소,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
3. 경제환경분과위원회 : 일자리산업국, 미래산업추진단(반도체산단과, 산단입지과), 농업기술센터, 환경위생사업소,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
4. 도시주택분과위원회 : 도시기획단, 도시정책실, 주택국, 미래산업추진단(플랫폼시티과) 소관 사항
5. 건설교통분과위원회 : 시민안전관, 교통건설국, 상수도사업소,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

② 분과위원회는 사업별 우선순위결정 등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수렴·집약하는 활동을 한다.

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

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5. 6. 8>

④ 분과위원회 위원장(이하 “분과위원장”이라 한다)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<개정 2015. 6. 8>

⑤ 분과위원장,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15. 6. 8>

⑥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⑦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,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⑧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⑨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,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15. 6. 8, 2018. 8. 9>

⑩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별로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분과위원회 소속 주무부서의 주무팀장으로 한다. 다만, 자치행정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자치행정실 주무부서의 주무팀장으로 하고, 도시주택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도시정책실 주무부서의 주무팀장으로 한다. <단서신설 2013. 5. 24, 2013. 12. 2, 2014. 10. 8, 2015. 6. 8, 개정 2016. 3. 11, 2018. 8. 9, 2018. 10. 16>

⑪ 위원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하여 배정하되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.

1. 같은 동에 거주(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 위원이 동일 분과위원회에 다수 포함되는 경우
2. 소속 분과위원회의 사업예산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3. 그 밖에 전문성 등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7조(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,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, 지역회의의 위원장으로 구성한다.

-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.
-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④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⑤ 운영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.
- ⑥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⑦ 조례 제21조제9항에 따른 지역회의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지역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5. 6. 8]

제8조(청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청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.

- ② 청년위원회의 위원은 만 30세 미만인 청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- ③ 시장은 청년위원회를 구성할 때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,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- ④ 청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⑤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청년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- ⑥ 부위원장은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⑦ 청년위원회는 자체 의견 수렴한 제안사업에 대해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·조정한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.
- ⑧ 청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⑨ 청년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한다.
- ⑩ 청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⑪ 청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청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고,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 팀장은 위원회 사무를 지원한다.

[본조신설 2015. 6. 8]

제9조(연구회 구성 및 운영)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연구회(이하 “연구회”라 한다)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연구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1.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4명 이내
2. 예산 관련 외부 전문가 2명 이내
3. 관내 시민단체 관계자 등 4명 이내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명 이내

③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,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⑥ 연구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[본조신설 2015. 6. 8]

제10조(위촉 및 해촉) ①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 위촉 시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,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.

② 보궐위원은 잔임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모집하여 위촉하되, 해촉(解囑) 위원이 재적위원의 5분의 1 이상일 경우로 한정한다. <개정 2018. 8. 9>

③ 시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원의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. 다만, 조례 제20조제1호 및 제3호의 경

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8. 8. 9>

④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때에는 위원회, 지역회의 위원장 및 해촉된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8. 9>

[전문개정 2015. 6. 8]

[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5. 6. 8]

[제목개정 2018. 8. 9]

제11조(회의록 작성 및 서명) ① 위원회, 지역회의 및 분과위원회, 청년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조하며,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, 부위원장,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.

[전문개정 2015. 6. 8]

[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5. 6. 8]

제12조(세부운영규정)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[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5. 6. 8]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3. 5. 24 규칙 제707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3. 12. 2 규칙 제717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. 12. 12.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부터 ③ 까지 생략

④ 「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0항 중 “자치행정국”을 “안전행정국”으로 한다.

⑤ 생략

부칙 <2014. 3. 31 규칙 제730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4. 10. 8 규칙 제765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1호의 “감사담당관, 안전행정국, 재정경제국”을 “감사관, 기획재정국, 행정문화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의 “문화복지국”을 “복지여성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의 “산업환경국, 농업기술센터”를 “경제산업국, 농업기술센터, 환경관리사업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의 “도시사업소”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5호의 “건설교통국, 상하수도사업소”를 “안전건설국, 교통관리사업소, 상하수도사업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0항 중 “안전행정국”을 “기획재정국”으로 한다.

④ 부터 ⑦ 까지 생략

부칙 <2015. 6. 8 규칙 제788호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6. 3. 11 규칙 제833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8. 9 규칙 제925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10. 16 규칙 제935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자치행정분과위원회 : 시민소통관, 감사관, 공보관, 정책기획관, 법무담당관, 청년담당관, 자치행정실, 재정국 소관 사항
2. 문화복지분과위원회 : 교육문화국, 복지여성국, 보건소, 도서관사업소

소관 사항

3. 경제환경분과위원회 : 일자리산업국, 농업기술센터, 환경위생사업소,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
4. 도시주택분과위원회 : 도시계획상임기획단, 도시정책실, 주택국 소관 사항
5. 건설교통분과위원회 : 시민안전담당관, 교통건설국, 상수도사업소,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

제6조제10항 단서 중 “행정혁신실”을 “자치행정실”로, “도시균형발전실”을 “도시정책실”로 한다.

② 및 ③ 생략

부칙 <2022. 5. 17 규칙 제1073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3호 중 “농업기술센터”를 “미래산업추진단(반도체산단과, 산단입지과), 농업기술센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도시계획상임기획단, 도시정책실, 주택국”을 “도시기획단, 도시정책실, 주택국, 미래산업추진단(플랫폼시티과)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시민안전담당관”을 “시민안전관”으로 한다.

② 생략

[별지 제1호서식] 〈개정 2016. 3. 11〉

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신청서

성명	(한글) (영문)	생년월일		성별	☐ 남 ☐ 여
주소 또는 거 소	우편번호()				
E - mail					
직업	※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				
전화번호	자택 :		직장 :		
	휴대전화 :				
개인정보 취급동의	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에 따라 본인 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 합니다. 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않음				
교부단체 소속확인	시 보조금 교부단체에서의 활동 여부 확인			☐ 예 (단체명 :)	
				☐ 아니오	
참여희망 분과위원회	① 자치행정 ② 복지보건 ③ 산업환경 ④ 도시주택 ⑤ 건설교통				
	제1희망	제2희망		제3희망	
특기사항	.※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전문지식 습득 여부 등을 상세히 기재(재정·예산 등 관련분야의 경력과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 는 자료 붙임)				

※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

위 본인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

용인시장 귀하

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16. 3. 11>

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

성명	(한글) (영문)	생년월일	성별	☐ 남 ☐ 여
주소 또는 거 소	우편번호()			
E - mail				
직업	※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			
신청분야	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() 비영리민간단체() 기타()			
	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단 체 명			
	지역회의의 경우 읍 · 면 · 동 명			
	기 단 체 명			
전화번호	자택 :		직장 :	
	휴대전화 :			
개인정보 취급동의	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에 따라 본인 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 합니다. 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않음			
교부단체 소속확인	시 보조금 교부단체에서의 활동 여부 확인		☐ 예 (단체명 :)	
			☐ 아니오	
참여희망 분과위원회	① 자치행정 ② 복지보건 ③ 산업환경 ④ 도시주택 ⑤ 건설교통			
	제1희망	제2희망	제3희망	
특기사항	※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전문지식 습득 여부 등을 상세히 기재(재정·예산 등 관련분야의 경력과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붙임)			

※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

상기자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구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위원장 ○○○ (서명 또는 인)
○○ 시민·사회·직능단체 등의 장(인)

용인시장 귀하

[별지 제3호서식] 〈개정 2016. 3. 11〉

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신청서

성명	(한글) (영문)	생년월일		성별	☐ 남 ☐ 여
주소 또는 거 소	우편번호(-)				
E - mail					
직업	※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				
전화번호	자택 :		직장 :		
	휴대전화 :				
개인정보 취급동의	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 합니다. 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않음				
교부단체 소속확인	시 보조금 교부단체에서의 활동 여부 확인		☐ 예 (단체명 :)		
			☐ 아니오		
특기사항	※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전문지식 습득 여부 등을 상세히 기재				

위 본인은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참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

○ ○ 구 청 장 귀하

[별지 제4호서식] <신설 2016. 3. 11>

주민참여예산 청년위원회 위원 신청서

성명		생년월일	
성별	☐ 남 ☐ 여		
주소	우편번호()		
학교/학년 또는 직업			
연락처	일반전화 :	휴대전화 :	
E - mail			
개인정보 취급동의	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 합니다. 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않음		
자기소개			
특기사항			

위 본인은 주민참여예산 청년위원회 참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

용인시장 귀하

[별지 제5호서식] <신설 2016. 3. 11>

주민참여예산 연구회 회원 신청서

성명			생년월일	
성별	☐ 남 ☐ 여			
주소	우편번호()			
소속 또는 직업				
연락처	일반전화 :		휴대전화 :	
E - mail				
개인정보 취급동의	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 합니다. 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않음			
자기소개				
특기사항				
해당분야	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분은 √ 표시해 주세요. ☐ 예산분야 전문가 ☐ 시민단체 ☐ 위원 ☐ 시의원 ※ 회원으로 선정되시면, 해당 증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			

위 본인은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참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

용인시장 귀하

[별지 제6호서식] <개정 2014. 3. 31>

제 호

위 축 장

용인시 ○○○구 ○○○로 ○○(○○동)
○ ○ ○

귀하를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.

(위촉기간 : ○○○○. ○○. ○○ ~ ○○○○. ○○. ○○)

년 월 일

용 인 시 장 (직인)

[별지 제7호서식] 〈개정 2014. 3. 31〉

제 호

위 축 장

용인시 ○○○구 ○○○로 ○○(○○동)
○ ○ ○

귀하를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1조에 따라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위원으로 위촉합니다.

(위촉기간 : ○○○○. ○○. ○○ ~ ○○○○. ○○. ○○)

년 월 일

○ ○ 구 청 장 (직인)

[별지 제8호서식] 〈개정 2015. 6. 8〉

주민참여예산(

☐ 위원회
☐ 지역회의
☐ 분과위원회
☐ 청년위원회

)회의록

일시				장소	
참석 상황	재적위원	참석	불참	(불참위원)	
안건					
심의내용					
의결사항					
기타사항					
서명	위원장(회장)		부위원장(부회장)		간사